

의안번호	2212041
의 퇴 인	김상훈의원
회 답 일	2025.8.27.
추계번호	25D429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된 인용재결 중 중요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시·도 행심 인용건수 50% 심리): 총 1,895만원(연평균 379만원)
- 시나리오2(시·도 행심 인용건수 75% 심리): 총 2,840만원(연평균 568만원)
- 시나리오3(시·도 행심 인용건수 100% 심리): 총 3,785만원(연평균 757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나리오1 (인용건수 50% 심리)	3.79	3.79	3.79	3.79	3.79	18.95
시나리오2 (인용건수 75% 심리)	5.68	5.68	5.68	5.68	5.68	28.40
시나리오3 (인용건수 100% 심리)	7.57	7.57	7.57	7.57	7.57	37.85

주: 본 추계는 재심청구사건 추정건수(연평균 825건, 1,237건, 1,650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1회당 심리·의결 건수로 나누어 시나리오별로 회의개최건수(1.51회, 2.27회, 3.03회)를 추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재심청구사건과 회의개최 건수가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1조의2(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특례 등)	제49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피청구인(이하 “시·군·구 피청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인용하는 재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재량규정
	안 제51조의3(재심청구에 대한 재결 등)	제6조제3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시·군·구 피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51조의2제1호에 따른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1조의2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특례 등)	O	—
	안 제51조의3 (재심청구에 대한 재결 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재심청구사건의 재결을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본위원회 참석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그 밖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기구로는 본위원회·소위원회·전문위원회가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시·군·구가 피청구인이 되는 중요 사건에 대하여 심리·의결하는 본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에 한정하여 추계함
 - 소위원회: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
 - 전문위원회: 정보공개청구사건과 보훈관련 사건에 관한 사전 검토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라 중앙심판위원회의 본위원회가 심리·의결하는 재심청구사건 수는 최근 5년(2020~2024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연평균 인용건수(1,650건)를 기준으로 중요 사건의 비중을 50%, 75%, 100%를 적용하여 추정함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건수의 50% 적용: 825건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건수의 75% 적용: 1,237건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건수의 100% 적용: 1,650건

[표 2]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구분	심리·의결			
	계	(일부)인용	기각	각하
2020	9,545	2,244	4,597	2,704
2021	7,048	1,675	4,019	1,354
2022	6,243	1,466	3,457	1,320
2023	9,807	1,577	3,976	4,254
2024	5,899	1,287	3,395	1,217
평균	7,708	1,650	3,889	2,17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심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을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 개최건수는 재심청구사건 건수(연평균 825건, 1,237건, 1,650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 회의 1회당 심리·의결 사건 수(연평균 545건)로 나누어 추정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 개최건수 추정: 1.51회 (중요사건 825건 심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 개최건수 추정: 2.27회 (중요사건 1,237건 심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 개최건수 추정: 3.03회 (중요사건 1,650건 심의)

[표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 회의 1회당 심리·의결 사건 수: 2020~2024년

(단위: 건)

구분	심리·의결				회의횟수	심리·의결 (회의당)
	계	(일부)인용	기각	각하		
2020	22,727	1,573	16,783	4,371	45	505
2021	18,873	1,710	14,892	2,271	45	419
2022	21,159	1,468	15,581	4,110	45	470
2023	27,887	1,247	15,994	10,646	38	734
2024	19,357	964	15,051	3,342	29	667
평균	22,001	1,392	15,660	4,948	40	54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의 위원정수와 민간위원 수는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 위원 현황: 2025.6. 기준

구분	공무원위원	민간위원	합계
위원정수	4명	5명	9명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과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50만원(회의참석 20만원, 안전검토 30만원)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재심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을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 수에 회의개최 건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된 인용 재결 중 중요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시·도 행심 인용건수 50% 심리): 총 1,895만원(연평균 379만원)
 - 시나리오2(시·도 행심 인용건수 75% 심리): 총 2,840만원(연평균 568만원)
 - 시나리오3(시·도 행심 인용건수 100% 심리): 총 3,785만원(연평균 757만원)

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A)		5	5	5	5	5	—
시나리오1 (인용건수 50% 심리)	지급단가(B)	0.5	0.5	0.5	0.5	0.5	—
	회의건수(C)	1.51	1.51	1.51	1.51	1.51	—
	소계(D=A×B×C)	3.79	3.79	3.79	3.79	3.79	18.95
시나리오2 (인용건수 75% 심리)	지급단가(E)	0.5	0.5	0.5	0.5	0.5	—
	회의건수(F)	2.27	2.27	2.27	2.27	2.27	—
	소계(G=A×E×F)	5.68	5.68	5.68	5.68	5.68	28.40
시나리오3 (인용건수 100% 심리)	지급단가(H)	0.5	0.5	0.5	0.5	0.5	—
	회의건수(I)	3.03	3.03	3.03	3.03	3.03	—
	소계(J=A×H×I)	7.57	7.57	7.57	7.57	7.57	37.85

주: 본 추계는 재심청구사건 추정건수(연평균 825건, 1,237건, 1,650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1회당 심리·의결 건수로 나누어 시나리오별로 회의개최건수(1.51회, 2.27회, 3.03회)를 추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재심청구사건과 회의개최 건수가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심청구사건 추정건수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1회당 심리·의결 건수로 나누어 시나리오별로 회의개최건수를 추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재심청구사건과 회의개최건수가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